

접 수	의안과 - (2016. 1. 28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부교재로서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1 월 28 일

청 원 인

성 명 : 김 용 희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 용 희
건명	부교재로서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 일
<p>소개의견</p> <p>본 청원인 ‘김 용희’ 외 14인’은 제 18회 임시회의 &amp; 청소년국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부교재로서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입니다</p> <p>2014. 10 .20 대전 투데이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서 대신 EBS 교재나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은 수 십 년째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교과서를 무시하고 사설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만연한 만큼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정규수업시간에 EBS 교재 사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는 광주 내 학교의 88.9%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뒤를 이어 부산 80,0%, 대전 76.0%, 서울 74.9% 순으로 EBS 교재를 수업시간에 쓴다고 응답했다.</p> <p>이미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 활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도 충실히 이수하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p>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본수업과 보충수업에서 수능연계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고교 1, 2학년 때 튼튼한 기본기를 쌓고 고교 3학년 시기에는 응용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법상으로는 위법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수능 연계 교재를 수능에 70%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책상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성균관대 이준식 교수는 수능 영어를 위해서 학교 수업과 수능 연계 교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 활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도 충실히 이수하고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2. 주요골자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무 사용한다.

2.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u>1. 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무 사용한다.</u> <u>2.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u>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서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